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177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개정 2004.1.29. 대통령령 제8247호) 및 동 규정시행규칙(개정 2004.1.30.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4호)의 개정에 근거하여 기존 '총정원제'에서 '표준정원제'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,823명에서 148명이 증원된 2,971명으로 함. (안 제2조)
- 정원의 총수 : 2,823명 → 2,971명(증 148명)
 -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 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2,810명 → 2,958 (증 148명)

□ 개정근거
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
-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
[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-1호 (2004.1.30)]

□ 개정 조례안 : 붙임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
- 관계법령 발췌서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 “2,823명”을 “2,971명”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“2,810명”을 “2,95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2,823명</u>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810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<u>2,971</u> 명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 <u>2,958명</u>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가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(개정 2004.12.9 대통령령 제247호)

제14조(표준정원의 책정)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“표준정원”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·도 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

제19조(정원의 규정) ①시·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-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(개정 2004.1.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24호)

제3조(표준정원)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
③영 제14조제2항에서 “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정원”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(이하 “보정정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(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)

구 분	표준정원	보정정원	비 고
충청북도교육청	2,971	3,060	